

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985
------	-----

2023. 9. 8.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9일, 아이수루 의원(찬성자 28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정례회】

-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9.7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아이수루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법률 개정에 따라 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” 과 “외국인환자 유치업자” 용어 정의를 변경함(안 제2조의제3호 및 제4호)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2021.1.1.)되어 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” 과 “외국인환자 유치업자” 의 등록 등 관리·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·도지사에게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음.

#### 나.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업무의 이관(안 제2조의 3호, 4호)

- 동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등 관리 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것임.

#### <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(개정 2020.2.18.)>

제6조(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)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1.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. 다만,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.
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

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

2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

3.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

- 관련법령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·도지사에게 사무를 이양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산재해 있고, 지역별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특색에 맞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으로 이해됨.
-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등 관리 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울특별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8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85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09일  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영철, 김용일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춘곤, 김형재,  
남창진, 민병주, 박승진,  
박영한, 박춘선, 박철성,  
봉양순, 신복자, 유만희,  
유정인, 유정희, 윤종복,  
이민옥, 이상욱, 이영실,  
이용균, 이원형, 이종태,  
임종국, 전병주, 한 신,  
홍국표 의원(28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 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법률 개정에 따라 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”과 “외국인환자 유치 업자” 용어 정의를 변경함(안 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

##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 이라 한다)” 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.

4. “외국인환자 유치업자(이하 “유치업자” 라 한다)” 란 외국인환자를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----- -----
1. ~ 2. (생략)	1. ~ 2.(현행과 같음)
3. “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”이란 시 소재의 의료기관으로서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<u>보건복지부장관에게</u>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.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-----.
4. “외국인환자 유치업자(이하 “유치업자”라 한다)란 외국인환자를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유치하고자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에 따라 <u>보건복지부장관에게</u> 등록된 자를 말한다.	4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장에게</u> -----.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<u>서울특별시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</u>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	제4조(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<u>시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